

제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6. 14.

제천시장

나. 회부일자 : 2006. 6. 15.

다. 상 정 일 자 : 2006. 6. 21.(제124회 정례회 자체행정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세정과장 박성웅)

가. 제안사유

-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 하여 포상금 지급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고
 -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심사절차를 철저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협회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급대상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신설. (제2조 제3항)
 - 지급기준을 세분화하여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 포상금의 지급은 제천시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지급. (제5조, 제7조)

-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고, 이 경우 형사 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후준)

-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일부 자체단체의 경우 세무담당 공무원의 체납세 특별징수 노력과 부당하게 일상적인 징수업무와 관련된 체납액 징수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당초 도입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징수포상금 지급한도가 시·군별로 상이함으로 이를 조정하고 포상금 지급시에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표준안의 범위내에서 우리시의 자체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의 절차를 거쳐 제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사안으로 절차적, 법규적 하자가 없다고 할 것임.
다만, 징수포상금 징수조례는 체납세액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적의 사용 되어야 할 것이며, 지급범위를 지나치게 위축하여 본래의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질의답변 요지

가. 질의요지

- 지방세 징수업무에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향후도 더욱 체납액 징수에 일념하여 주시고, 본 포상금을 도입취지에 맞게 지출하기 바람(위원장 윤성열)

나. 답변요지 (세정과장 박성웅)

- 예, 체납액 일소에 행정력을 집중 하겠으며, 반드시 지급 범위내에서 지급도록 하겠음

5. 소수의견

“없 음”

6. 토론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심사보고 불임서류

- 제천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끝.